

1. 개정이유

강등(일부 효력),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('23. 4. 11.), 징계 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징계 가중기간 적용 규정 정비(안 제5조 일부개정)

- 1) 징계 가중기간은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
- 2) 징계 가중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계산방법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7.12. ~ 8.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공무원임용령」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”을 “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하여 징계처분 기간과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(이 조에서 ‘처분 등 기간’이라 한다)”으로, “수 있고,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”를 “수 있다. 다만 징계처분을 받아 처분 등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분에 대한 처분 등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한다.”으로 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징계위원회는 처분 등 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징계의 가중) ① (생 략)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,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5조(징계의 가중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징계처분일부 터 기산하여 징계처분 기간과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2조제1항 제2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(이 조에서 ‘처분 등 기간’이라 한 다) ----- 수 있다. 다만 징계처분을 받아 처분 등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 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처 분에 대한 처분 등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한다. ③ 징계위원회는 처분 등 기간 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 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 결할 수 있다.